

배포 일시	2023. 1. 20.(금)		
담당 부서	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	책임자	과 장 우정훈 (044-201-3538)
		담당자	사무관 고명윤 (044-201-3539)
보도일시	2023년 1월 25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 25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「골재채취법 시행령」 개정안 25일 국무회의 통과

### - 골재 품질관리 강화 · 골재 선별·파쇄 시설의 환경 훼손 방지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「골재채취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.
-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콘크리트 품질강화를 위해 콘크리트 배합 시 들어가는 골재의 품질 기준을 강화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선별·파쇄 시설의 입지 기준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

#### << 골재 품질 기준 강화 >>

- 골재원별·용도별 골재의 품질 기준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골재 품질 관리를 강화하였다.
- 콘크리트 품질강화를 위해 전체 골재 사용의 80% 이상을 차지하는 산림 골재와 선별·파쇄 골재에도 하천·바다육상 골재와 동일하게 점토덩어리 기준\*을 도입하는 한편,

\* 점토란 지름이 0.002mm 이하인 미세한 흙입자로 골재 내 점토덩어리 함유량이 높으면 콘크리트의 흡수성이 커져 콘크리트 품질 저하를 초래 → 골재 내 점토덩어리 함유량 기준 마련(산골재 1.0% 이하, 굵은 골재 0.25% 이하)

○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\*용 골재에 대한 품질기준을 신설하였다.

\* 시멘트, 잔골재 등의 원재료를 공장에서 미리 혼합하여 공사현장에서 물만 섞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, 미장·바닥·조적재로 주로 활용되는 건설자재

### << 자연녹지지역 골재 선별·파쇄 시설에 대한 입지 기준 상향 >>

□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 선별·파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최소 1만㎡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하였다.

○ 「골재수급 및 품질개선방안」(‘21.6월)에 따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개정(‘22.1월)되어 자연녹지지역\*에 골재 선별·파쇄 시설의 입지를 허용(지자체가 조례로 허용)하였으나, 선별·파쇄 시설이 무분별하게 난립될 경우 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,

\* 도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,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 개발만을 허용

- 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최소 1만㎡ 이상의 부지를 갖춘 경우에만 골재 선별·파쇄업을 허용키로 하였다.

### << 골재채취 변경허가 대상 완화 >>

□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채취허가량을 감축하고자 하는 경우를 기존 허가 대상에서 신고 대상으로 변경하였다.

○ 기존에는 채취허가량의 감축 시에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, 앞으로는 채취허가량의 감축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 하는 것으로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.

□ 이번에 개정된 「골재채취법 시행령」은 2023년 1월 31일 공포 시부터 시행된다. 다만, 산림 골재와 선별·파쇄 골재 품질 기준에 점토덩어리 기준 도입 규정은 업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2024년 1월 31일 부터 시행한다.

-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“이번 개정으로 기존 골재채취법령 운영상 다소 미비했던 부분이 개선되고 보완될 것으로 기대한다” 면서,
- 아울러 “올해 골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수시 품질검사를 확대 실시하고, 골재 품질 기준에 골재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한 미분을 뜻하는 토분의 함유량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” 이라고 밝혔다.

